



제434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검 토 보 고

〈일대일 전담 보호관찰관의 지정 대상 확대 등〉

■ 김기표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16013호)

2026. 4.

법 제 사 법 위 원 회  
전 문 위 원 최 기 도



## 목 차

|                                         |    |
|-----------------------------------------|----|
| I. 제안경위 .....                           | 1  |
|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 1  |
| III. 검토의견 .....                         | 2  |
| 1. 보호관찰소장의 수사를 위한 수신자료 열람 등 근거 마련 ..... | 2  |
| 2. 일대일 전담 보호관찰관의 지정 대상 확대 .....         | 5  |
| 참고자료, 보호관찰관 증원 관련 국회예산정책처 비용추계 산정 근거 ·  | 13 |



##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김기표의원 등 10인

2. 제 안 일 : 2026. 1. 13.

3. 회 부 일 : 2026. 1. 14.

##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성폭력범죄는 사회적 파급효과가 크고 국민 불안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성폭력범죄로 전자장치가 부착된 사람 중 재범 위험성이 현저히 높은 사람에 대하여 그 피부착자 1명만을 전담하는 보호관찰관 지정을 확대함으로써 이들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그러나, 현행 법률은 19세 미만의 사람을 대상으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피부착자 중 재범 고위험군에 대해서만 일대일 전담 보호관찰관을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에, 일대일 전담 보호관찰관 지정 범위를 피해자의 연령에 관계없이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피부착자 중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높은 사람”으로 확대함으로써 전자감독 제도가 공백 없이 실효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2조의2 등).

### III. 검토의견

#### 1. 보호관찰소장의 수사를 위한 수신자료 열람 등 근거 마련

□ 개정안은 보호관찰소의 장이 전자장치 피부착자가 전자장치 효용을 훼손하는 범죄 등을 저지른 경우 이에 대한 수사를 하거나 수사상 협조를 요청하기 위해 전자장치로부터 발신되는 전자파 수신자료(이하 “수신자료”라 한다)를 열람·조회·제공·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임(안 제16조제2항제4호).

| 현 행                                                                         | 개정안                                                              |
|-----------------------------------------------------------------------------|------------------------------------------------------------------|
| 제16조(수신자료의 보존·사용·폐기 등) ① (생략)                                               | 제16조(수신자료의 보존·사용·폐기 등) ① (현행과 같음)                                |
| ② 수신자료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외에는 열람·조회·제공 또는 공개할 수 없다.                                | ② -----<br>-----<br>-----.                                       |
| 1. ~ 3. (생략)                                                                | 1. ~ 3. (현행과 같음)                                                 |
| 4. 보호관찰소의 장이 피부착자의 제38조 또는 제39조에 해당하는 범죄 혐의에 <u>대한 수사를 의뢰하기</u>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 4. -----<br>-----<br>----- <u>대하여 수사를 하거나 수사상 협조를 요청하기</u> ----- |
| ③ 삭제                                                                        |                                                                  |
| ④ ~ ⑦ (생략)                                                                  | ④ ~ ⑦ (현행과 같음)                                                   |

□ 현행법은 보호관찰소의 장이 피부착자의 제38조 또는 제39조에 해당하는 범죄 혐의<sup>1)</sup>에 대한 수사를 의뢰하기 위하여 수신자료를 열람·조회·제공·공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개정안은 보호관찰소의 장이 수신자료를 열람·조회·제공·공개할 수 있는 사유를 ‘해당 범죄에 대해서 수사를 의뢰하기 위해 사용하는 경우’에서 ‘직접 수사를 하거나 수사상 협조를 요청하기 위해 사용하는 경우’로 변경함으로써 보호관찰소의 장이 특별사법경찰관으로서 수사권한이 있음을 명백히 하려는 것으로 그 입법 취지를 이해할 수 있음.

○ 2020년 12월 법률 제17570호로 개정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 또는 제39조에 해당하는 범죄 혐의에 대해 보호관찰소의 장이 특별사법경찰관으로서 해당 범죄에 대한 수사권한을 갖게 되어 해당 사건을 직접 수사하거나, 일반

---

1)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벌칙) ① 피부착자가 제14조제1항(제27조 및 제31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전자장치의 부착기간 중 전자장치를 신체에서 임의로 분리·손상, 전파 방해 또는 수신자료의 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39조(벌칙)** ① 피부착자 또는 보호관찰대상자가 제9조의2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의 준수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피부착자 또는 보호관찰대상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경고를 받은 후 다시 정당한 사유 없이 같은 법 제32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피부착자 또는 보호관찰대상자가 제9조의2제1항제1호·제2호·제2호의2·제5호 또는 제6호의 준수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수사기관인 일반 경찰공무원 등과 함께 수사할 수 있게 되었음.<sup>2)</sup>

-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은 이를 반영한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아 보호관찰소의 장의 해당 범죄에 대한 수사 권한이 없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었으나, 개정안은 보호관찰소의 장이 피부착자의 제38조 또는 제39조에 해당하는 범죄 혐의에 대한 수사권한이 있음을 명확히 하여 현행법의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으로 입법필요성이 인정됨.

---

2)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3조(교도소장 등) ⑥ 보호관찰소 또는 그 지소의 장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 또는 제39조에 규정된 피부착자의 범죄에 관하여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한다.

## 2. 일대일 전담 보호관찰관의 지정 대상 확대

□ 개정안은 보호관찰소의 장이 피해자의 연령에 관계없이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전자장치 피부착자 중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높은 사람에 대해서 일정기간 피부착자 1명만을 전담하는 보호관찰관을 지정하도록 하는 내용임(안 제32조의2).

| 현 행                                                                                                                                                                                                            | 개정안                                                                                                                                                  |
|----------------------------------------------------------------------------------------------------------------------------------------------------------------------------------------------------------------|------------------------------------------------------------------------------------------------------------------------------------------------------|
| 제32조의2(부착명령 등 집행전담 보호관찰관의 지정) 보호관찰소의 장은 소속 보호관찰관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전담하는 보호관찰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보호관찰소의 장은 <u>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해서 성폭력범죄</u> 를 저지른 피부착자 중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높은 사람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그 피부착자 1명만을 전담하는 보호관찰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 제32조의2(부착명령 등 집행전담 보호관찰관의 지정) -----<br>-----<br>-----<br>-----<br>-----<br>-----<br><u>성폭력범죄</u> -----<br>-----<br>-----<br>-----<br>-----<br>-----. |
| 1. ~ 4. (생략)                                                                                                                                                                                                   | 1. ~ 4. (현행과 같음)                                                                                                                                     |

□ 현행법은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해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피부착자 중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높은 사람 1명을 전담하는 보

호관찰관을 지정하여 일정기간 보호관찰(이하 “일대일 전담 보호관찰”이라 한다)을 실시하고 있음.

○ 일대일 전담 보호관찰관은 오늘날의 형사법 및 형사정책은 피해자를 형사법 질서의 중요한 당사자로 보아 법을 통해 피해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이론적 배경 위에서<sup>3)</sup> 2017년 아동 성폭행 범죄자 조두순의 출소를 반대하는 국민청원에 대한 공식 입장으로 정부가 24시간 전담관리 방안 등을 제시함에 따라<sup>4)</sup> 2019년 법률 제16314호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도입되었음.

○ 다만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일대일 전담 보호관찰관 지정 대상의 확대에는 상당한 규모의 인력 충원이 필요하고 대규모의 예산이 지속적으로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바, 2019년 일대일 전담 보호관찰관 제도의 도입 이후 현재까지 동 제도가 어느 정도의 재범 방지 효과가 있었는지와 관련하여 이러한 인력 충원 및 재정 부담을 정당화할 수 있는 유의미한 재범 방지 효과가 있었음을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일대일 전담 보호관찰관 도입 전에는 법무부 내부 지침에 따라 전자감독을 담당하는 보호관찰관 1인이 최대 10명 이내의 피부

3) 양천수, 「1대1 전담 보호관찰제도」, 『법학논총』 제28권 제1호, 2021, p190

4) 강계만, “靑 ‘조두순 출소막는 재심 불가능…전자발찌, 주거제한’, 매일경제, 2017.12.6. (<https://www.mk.co.kr/news/politics/8084199>)

작자를 초과하지 않는 선에서 전자감독 업무를 수행하였으나,<sup>5)</sup> 동 제도의 도입을 통해 대상자 이동경로 24시간 집중 추적, 주 3회 이상 상시 대면 면담과 주 5회 이상 대상자의 행동 관찰을 통한 밀착 지도감독, 월 1회 이상의 의무적 심리치료 및 경찰과의 정보공유 강화 등의 방식으로 제도가 운영 중에 있음.

○ 일대일 전담 보호관찰관의 대상은 재범위험성, 범죄전력, 정신병력 등의 기준에 따라 보호관찰소장이 처우회의를 거쳐 지정 여부를 결정하고, 그 대상으로 지정되면 최소 6개월간 일대일 전담 보호관찰이 실시되며, 처우회의 재심사를 통해 해제할 수 있음.<sup>6)</sup>

○ 법무부에 따르면, 일대일 전담 보호관찰관의 운영은 「전자장치 부착법 시행지침」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지만, 해당 지침의 구체적인 내용이 공개될 경우 전자감독 집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상당한 사유가 있어 공개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나 현행 일대일 전담 보호관찰관 제도가 적절하게 설계되어 운영되고 있는지를 국회 등 외부에서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이해됨.

□ 개정안은 일대일 전담 보호관찰관의 대상을 19세 미만의 사람에

---

5) 다만, 각 보호관찰소의 소속 직원 규모 등의 여건에 따라 담당직원의 사건 수를 조정하기 곤란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10명을 초과해 업무를 분담시킬수 있음, 전담보호관찰관은 보호관찰소의 상황에 따라 일반보호관찰사건을 담당하는 경우도 있었음.

6) 2019년 당시 법무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심의위원회를 통해 운영되었으나, 법무부에 따르면 현재 처우회의에서 이를 담당하고 있음. (법무부 보도자료, “앞으로 재범위험성이 높은 미성년자 대상 성폭력범죄자는 출소 후에도 24시간 내내 일대일로 집중관리한다.”, 2019. 4. 15.)

대해서 성범죄를 저지른 피부착자에서 피해자의 나이와 무관하게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피부착자로 확대함으로써 피부착자의 동종범죄 재범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고,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한다는 점에서 입법취지를 긍정할 수 있음.

- 성폭력범죄는 피해자는 물론 피해자 가족에게까지 씻을 수 없는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후유증을 남겨 삶의 근간을 흔들며, 피해자의 성적자기결정권과 신체의 자유 등 개인적 법익을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에 해당함.
- 성폭력범죄의 경우 여전히 전자감독 대상자가 동종범죄를 재범하는 사례가 종종 나타나고 있음.<sup>7)</sup>

#### <성폭력 전자감독 대상자 동종재범 현황>

| 구분       | 2019  | 2020  | 2021  | 2022  | 2023  |
|----------|-------|-------|-------|-------|-------|
| 동종재범사건   | 55    | 41    | 46    | 24    | 30    |
| 성폭력 실시사건 | 3,239 | 3,239 | 3,279 | 3,282 | 3,287 |

자료 : 법무부, 2024년도 범죄예방정책 통계분석

- 일대일 전담 보호관찰 제도 도입 이후 효과성을 분석한 연구에서 보호관찰관 및 법학·범죄학 분야 전문가 집단에 대한 설문 결과, 일대일 전담 보호관찰에 선정되어야 할 유형으로 성도착

7) 이희경, “전자발찌 훼손 살인범 강윤성은 왜 일대일 감시 대상에서 제외됐나”, 『세계일보』, 2021. 9. 2.

자, 성인 대상 폭력적 성범죄자를 선택한 의견이 높게 제시된 점을 감안하면 일대일 전담 보호관찰관의 지정 대상을 확대하는 개정안의 입법 필요성을 긍정할 수 있음.<sup>8)</sup>

#### <일대일 전담 보호관찰에 선정되어야 할 유형 설문 결과>

| 구 분           | 득표  | 비율    |
|---------------|-----|-------|
| 아동대상 계획적 성범죄자 | 34  | 22.8% |
| 소아기호증         | 28  | 18.8% |
| 성도착자          | 26  | 17.4% |
| 성인대상 폭력적 성범죄자 | 20  | 13.4% |
| 알코올 중독자       | 15  | 10.1% |
| 폭력성 높은 자      | 13  | 8.7%  |
| 정신질환자         | 9   | 6.0%  |
| 정신지체자         | 4   | 2.7%  |
| 소 계           | 149 |       |

자료 : 「1:1 전담 전자감독 효과성 분석 및 발전방안」, 법무부 연구보고서

□ 개정안과 같이 일대일 전담 보호관찰관의 대상을 확대할 경우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인력의 증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개정안의 입법취지와 함께 다음과 같은 국가의 재정 소요를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일대일 전담 보호관찰 제도가 도입되기 직전인 2018년부터 2025년까지 전자감독 인력 현황과 일대일 전담 보호관찰 대상자 지

8) 박미량, 「1:1 전담 전자감독 효과성 분석 및 발전방안」, 법무부 연구보고서, 2020. pp153~154

정현황을 살펴보면 전자장치 부착 대상자 확대 등과 함께 전자  
감독 인력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음.<sup>9)</sup>

### <2018년 ~ 2025년 전자감독 인력 현황 등>

| 구분                   | 2018   | 2019   | 2020   | 2021   | 2022   | 2023   | 2024   | 2025   |
|----------------------|--------|--------|--------|--------|--------|--------|--------|--------|
| 사건 수                 | 3,126건 | 3,111건 | 4,052건 | 4,316건 | 4,421건 | 4,188건 | 4,474건 | 4,827건 |
| 지도감독<br>사건*          | 3,126건 | 3,103건 | 4,026건 | 4,286건 | 4,348건 | 4,090건 | 4,352건 | 4,563건 |
| 전담직원<br>수**          | 162명   | 229명   | 211명   | 242명   | 255명   | 225명   | 223명   | 234명   |
| 1인당<br>사건            | 19.3건  | 13.6건  | 19.1건  | 17.7건  | 17.1건  | 18.2건  | 19.5건  | 19.5건  |
| 일대일<br>전자감독<br>지정 현황 | -      | 8명     | 26명    | 30명    | 73명    | 98명    | 100명   | 100명   |

\*전체 전자감독 대상자 중 1:1 전담, 스토킹 잠정조치 대상자를 제외한 지도감독 대상 사건 수

\*\*전체 전자감독 분야 직원 중 1:1 전담 등을 제외한 지도감독 전담직원 수

자료: 법무부

- 법무부는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행정안전부와 협의를 통해 단계적으로 150명의 인력을 충원할 계획이라고 함. 이 경우 보호관찰 담당 공무원 인력 증원에 대한 예산정책처의 비용추계<sup>10)</sup>에 따르면 보호관찰 인력 1인당 연간 약 1억 1,000여만원이 소요된다고 하므로 개정안으로 인해 최소 연평균 165억원 수준의 추가적인

9) 2020년 법 개정으로 같은 해 8월부터 가석방된 사람에 대한 전자감독 범위가 특정범죄에서 모든 범죄로 확대되었고 형사피고인에 대한 전자장치 부착 조건부 보석제도가 시행되었음 ([법률 제 16923호, 2020. 2. 4., 일부개정]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2023년 법 개정을 통해 2024년 1월부터 스토킹행위자의 잠정조치에 전자장치 부착 제도 도입으로 인한 전자장치 부착 대상자가 확대됨 ([법률 제19519호, 2023. 7. 11., 일부개정]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10) [참고자료] 보호관찰관 증원 관련 국회예산정책처 비용추계 산정 근거

국가재정 소요가 발생할 것으로 보임.

- 개정안이 시행되어 인력을 충원하는 경우 일대일 전담 보호관찰관으로서 갖추어야 할 전문성, 경력 및 구체적인 충원 계획 등을 함께 준비할 필요가 있음.<sup>11)</sup>

□ 개정안을 입법하는 경우 추가적으로 검토가 필요한 현행법 관련 사항은 다음과 같음.

- 현행법은 일대일 전담 보호관찰관 제도에 대하여 ‘보호관찰소장은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해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피부착자 중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높은 사람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 그 피부착자 1명만을 전담하는 보호관찰관을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으로, ‘재범의 위험성’의 판단, ‘일정 기간’의 결정과 그 연장 여부, 그리고 지정의 해제 등 구체적인 내용을 규정하고 있지 않음. 이에 따라 앞에서 본 법무부 내부 지침인 「전자장치 부착법 시행지침」 등에서 보호관찰소장이 처우회의를 거쳐 이를 심사하는 것으로 보임.

- 일대일 전담 보호관찰 제도는 피부착자에게 일반 전자감독보다 강한 통제 수단이라는<sup>12)</sup> 점에서 일대일 전담 보호관찰 대상자를

---

11) 일대일 전담 보호관찰관은 최소 수년간 성인보호관찰 경력을 쌓고, 피부착자에 대한 이해 등 전문성이 필요할 수 있음. (박미량, 1:1 전담 전자감독 효과성 분석 및 발전방안, 법무부 연구보고서, 2020, pp128~139)

12) 법무부 보도자료, ‘조두순이 외출 가능한 시간에 외출하게 되면 전담보호관찰관이 항상 동행하

판단하는 처우회의의 설치 근거, 기간, 지정 해제 요건 등은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거나<sup>13)</sup> 적어도 법률유보원칙에 따라 그 대강을 법률에서 규정하고 구체적인 내용은 하위 법령에 위임하여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므로<sup>14)</sup> 이를 위한 입법 조치에 대한 논의가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임.

|       |
|-------|
| 문 의 처 |
|-------|

|              |
|--------------|
| 02-6788-5075 |
|--------------|

---

여 위험을 원천 차단하고 있으며, 주 1회 이상 정신건강 전문요원이 심리 치료를 진행하며 근본적인 성행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025. 9. 17.

13) 국회사무처 법제실, 「법제기준과 실제(2024 개정증보판)」, p.27~28.

14) 법률유보의 원칙은 ‘법률에 의한’ 규율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법률에 근거한’ 규율을 요청하는 것이므로 기본권 제한의 형식이 반드시 법률의 형식일 필요는 없고 법률에 근거를 두면서 헌법 제75조가 요구하는 위임의 구체성과 명확성을 구비하기만 하면 위임입법에 의하여도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다. (헌법재판소 2016. 4. 28. 2012헌마 549)

- ☐ 증원인원(40명) 인건비 등과 관련된 비용은 공무원 보수, 기관부담금, 기본경비, 사업비, 자산취득비임
- 직급별 연봉액은 법무부에서 제출한 2022년 보호관찰관 직급별 평균 연봉 자료를 참고하고, 직급별 인원은 법무부 직제 시행규칙을 참고하여 추정
    - 피부착자를 직접 관리·감독하는 업무는 6급 이하 직원들이 담당하고 있음

[표 1] 증원인원에 대한 보수: 2022년

(단위: 백만원)

| 구분         | 직급별 보수 |     |     |     | 총 합   |
|------------|--------|-----|-----|-----|-------|
|            | 6급     | 7급  | 8급  | 9급  |       |
| 1인당 연봉액(A) | 77     | 65  | 49  | 37  | -     |
| 증원인원(B)    | 8      | 11  | 11  | 10  | 40    |
| 보수(A×B)    | 616    | 717 | 541 | 374 | 2,248 |

자료: 법무부

- 여기에 국회예산정책처가 전망한 명목임금상승률, 기관부담금 비율, 법무부 인건비 대비 기본경비·사업비 비율(6.2%, 60.2%) 및 자산취득비를 반영한 인건비 등은 다음의 표와 같음

[표 2] 증원인원에 대한 인건비 등: 2023~2027년

(단위: 백만원)

| 구분    | 2023  | 2024  | 2025  | 2026  | 2027  | 합계     |
|-------|-------|-------|-------|-------|-------|--------|
| 보수    | 2,311 | 2,378 | 2,450 | 2,526 | 2,604 | 12,269 |
| 기관부담금 | 302   | 314   | 327   | 340   | 350   | 1,634  |
| 기본경비  | 142   | 147   | 151   | 156   | 161   | 756    |
| 사업비   | 1,392 | 1,433 | 1,476 | 1,522 | 1,569 | 7,391  |
| 자산취득비 | 174   | -     | -     | -     | -     | 174    |
| 합계    | 4,322 | 4,272 | 4,404 | 4,543 | 4,684 | 22,224 |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 ☐ 개정안에 따라 보호관찰관 40인을 확대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3년부터 2027년까지 총 222억원(연평균 44억원)이 발생할 것으로 추계

주: 국회예산정책처 비용추계서(의안번호 2114649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비용추계서)를 재구성